**PART. 2 난민심사 현황**

**간단히 보는 2017년 난민 심사 현황**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난민과, 2017.02.05회신)

|  |  |
| --- | --- |
| **9,557명** | 2017.12. 31 기준 총 9,557명이 난민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 **7,209명** | 9,557명 중 7,209명은 1차 심사 중에 있습니다.  |
| **2,348명** | 9,557명 중 2,348명은 2차 심사 중에 있습니다.  |
| **37명** | 난민심사 담당 공무원은 전국37명 입니다. |
| **7개월** | 2017년 난민신청자들은 신청 후 평균 7개월을 기다려 1차심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

1. **단계별 심사 현황**

한국에 입국한 난민들은 법무부에 난민 신청함으로써 난민 지위의 확인(인정)[[1]](#footnote-1)을 요청합니다. 법무부 심사는 신청, 이의신청 두 단계로 나누어지고, 신청자들은 신청단계에서 법무부와의 면담절차를 거칩니다. 신청단계에서 불인정통지를 받은 신청자들은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서도 기각(거절)통지를 받은 신청자들은 법무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사법부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표1] 심사단계별 난민인정자 수 (’01~’17.12)**

 **(단위:명)**

|  |  |  |  |
| --- | --- | --- | --- |
| **연도** | **법무부 1차** | **법무부2차[[2]](#footnote-2)** | **행정소송** |
| 2001 | 1 | - | - |
| 2002 | 1 | - | - |
| 2003 | 11 | 1 | - |
| 2004 | 14 | - | - |
| 2005 | 9 | - | - |
| 2006 | 6 | 1 | 1 |
| 2007 | 1 | - | 1 |
| 2008 | 4 | - | 16 |
| 2009 | 45 | 10 | 4 |
| 2010 | 20 | 8 | 9 |
| 2011 | 3 | 8 | 18 |
| 2012 | 25 | - | 15 |
| 2013 | 5 | 9 | 10 |
| 2014 | 18 | 53 | 3 |
| 2015 | 13 | 27 | 0 |
| 2016 | 17 | 10 | 3 |
| 2017 | 27 | 24 | 5 |

**[표2] 난민법 시행 후 심사단계별 난민 인정률 (‘13~’17.12)**

 **(단위:%)**

|  |  |  |  |
| --- | --- | --- | --- |
| **연도** | **법무부 1차** | **법무부 2차** | **행정소송** |
| 2013 | 0.8 | 1.5 | 1.7 |
| 2014 | 1.3 | 3.7 | 0.07 |
| 2015 | 0.6 | 1.2 | 0 |
| 2016 | 0,2 | 0.1 | 0.04 |
| 2017 | 0.4 | 0.4 | 0.08 |

[표1], [표2]는 법무부, 행정소송 심사단계에서 인정받은 난민들의 수와 그에 따른 인정률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난민법 시행 후에도 난민 인정률은 종전과 큰 차이가 없고, 2016년에는 오히려 큰 폭으로 내렸다가, 2017년에는 단계별로 0.5%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1. **공항만 접수 현황**

공항만에서도 난민신청이 가능해진 지 5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난민법 시행 이전에는 제도가 없어 난민신청 의사를 밝히고도 송환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공항만에서 난민신청 의사를 밝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매월 꾸준한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3] 2017년 공항만 난민신청자 월별 현황**

**(단위: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인원 | 10 | 14 | 9 | 13 | 13 | 45 | 20 | 11 | 9 | 16 | 23 | 14 | 197 |

2017년 공항만 난민신청자는 총 197명으로 전년도 187명과 비슷합니다.

공항만에서의 난민신청은 본격적인 난민심사가 아닌, ‘입국해서 난민신청을 할 만한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회부/불회부 심사입니다. 회부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난민신청이 접수되고 입국할 수 있지만, 불회부처분을 받은 사람은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은 것처럼 본국으로의 송환을 앞두게 됩니다. 불회부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절차 또한 마련되어있지 않아 소송을 통해 취소를 다투어야 합니다.

**[표4] 연도별 공항만별 난민신청자 회부·불회부 현황  ('13~’17.12)**

 **(단위: 건)**

|  |  |  |  |  |  |
| --- | --- | --- | --- | --- | --- |
| **연도/****사무소** | **인천공항** | **김해공항** | **제주공항** | **울산** | **동해** |
| **신청** | **회부** | **불회부** | **신청** | **회부** | **불회부** | **신청** | **회부** | **불회부** | **신청** | **회부** | **불회부** | **신청** | **회부** | **불회부** |
| 2013 | 25 | 15 | 10 | - | - | - | - | - | - |  | 0 | 1 | - | - | - |
| 2014 | 71 | 26 | 45 | 70 | 26 | 44 | - | - | - | - | - | - | - | - | - |
| 2015 | 393 | 284 | 109 | 6 | 2 | 4 | 1 | 1 | 0 | - | - | - | - | - | - |
| 2016 | 168 | 57 |  | 7 | 0 |  | 11 | 4 | - | - | - | - | 1 | 0 | - |
| 2017 | 184 | 20 |  | 2 | 0 |  | 11 | 1 | - | - | - | - | 0 | 0 | - |

**(단위: 건)**

2017년에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회부율을 보였습니다. 다섯 군데의 공항만 중 인천공항 난민신청 접수 건이 9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그런 인천공항에서도 열 명 중 한 명, 단 10%의 신청자만이 회부결정을 받아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본국으로 송환되었거나, 불회부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할 때까지 공항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난민을 강제송환 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음에도, 공항만 불회부 사유별 현황은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3]](#footnote-3)

\* 공항만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와 구체적인 불회부 사유가 궁금하시다면, 공항만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 <http://www.nancen.org/1536>

1. **법무부 1차 심사 현황**

**[표5] 연도별 법무부 1차 심사 난민인정자 현황 (‘13~’17.12)**

**(단위: 건)**

|  |  |
| --- | --- |
| **연도** | **인정자 수** |
| 2013 | 5 |
| 2014 | 18 |
| 2015 | 13 |
| 2016 | 17 |
| 2017 | 27 |

 2017년에는 심사종료자 6,015명 중 27명이 법무부 1차심사에서 인정받았습니다. 1만 명에 가까운 난민신청자 중 단 91명[[4]](#footnote-4)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매년 2%대를 넘지 못하는 인정률에는 적은 심사공무원들 숫자와 이에 따른 부실심사의 의혹, 신청자의 개인적이고 특수한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듯한 불인정 사유서, 절차와 권리에 대한 안내 부족, 신청자들의 언어를 정확하게 전달해 줄 통역서비스 미비 등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런 중에 신청자의 98%가 넘는 사람들이 불인정 결과를 받아 들고자 평균 7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법무부는 낮은 인정률에 대해“난민 인정률이 높고 그로 인해 더 많은 난민들이 보호를 받도록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인권 우선적 난민행정의 필요성과 난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도덕적 책무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난민을 보호하는 것과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것의 상관성이 반드시 높지 않다는 점이 간과될 수 있다. 국제사회의 난민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의 역사는 인도적 원칙과 국제주권의 원칙 간의 경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도주의 원칙도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의 국내외적 정치적 환경에 의해 수정되기도 한다는 국제사회의 현실에 대한 이해도 병행될 때 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 더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5]](#footnote-5) 라는 입장입니다.

1차심사에서 불인정을 받을 경우를 위해 이의신청과 소송절차는 마련되어있지만, 바람직한 것은 첫 심사에서 신청자들의 주장이 충분히 고려되고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인정/불인정 사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단순히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난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부의 심사결과가 난민신청자들에게 납득할만한 것이 되기를, 당사자가 보아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가능한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난민 인정률은 이러한 토대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이지, 그 자체로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관성이 반드시 높지 않다’는 말로 낮은 인정률을 정당화하기에는 크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1. **법무부 이의신청 단계 심사 현황**

**[표6] 연도별 법무부 이의신청 단계 난민인정자 현황 (‘13~’17.12)**

**(단위: 건)**

|  |  |
| --- | --- |
| **연도** | **인정자 수** |
| 2013 | 9 |
| 2014 | 53 |
| 2015 | 27 |
| 2016 | 10 |
| 2017 | 24 |

난민법 시행 이후 법 제23조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난민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3개의 분과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난민위원회는 변호사나 교수, 난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이었던 사람, 난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들이 3년의 임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심사를 담당하는 난민위원회의 개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5년 기준 1년에 네 번 열리던 것과는 달리, 2016년부터는 6번의 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한 해 동안 심사하는 신청 건수도 2015~2016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2017년에는 2016년 4,347건과 비슷한 수준의 건수를 심사했습니다.

**[표7] 2017년 난민위원회 개최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회** | **제2회** | **제3회** | **제4회** | **제5회** | **제6회** | **합계** |
| 소집시기 | 2/17 | 4/14 | 6/2 | 7/12 | 9/29 | 12/1 |  |
| 심사건수 | 721 | 1,077 | 470 | 801 | 638 | 835 | 4,542 |

이의신청 절차는 1차심사 과정에서 정보의 누락 및 왜곡, 통역의 오류, 진술 기회의 박탈 등의 문제를 보완합니다. 1차심사에서 생길 수 있는 결정 오류를 수정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의심사에서 면담이나 추가 인터뷰가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1차 불인정사유를 토대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추가 증거자료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받는 신청자 또한 거의 없습니다. 이에 사실상 1차심사에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심사받게 됩니다. 위원들의 숫자와 한 회당 처리하게 되는 신청 건수를 살펴볼 때, ‘1차심사에서 빠진 것은 없는지,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을 실제로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표8] 이의신청을 통한 난민인정 현황 (‘94~’17.07)**

**(단위: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94~’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7** |
| **이의신청****심의완료** | 12,631 | 1,939 | 324 | 968 | 1,995 | 4,341 | 3,064 |
| **난민인정** | 139 | 27 | 15 | 48 | 27 | 10 | 12 |

이의신청을 통한 난민 인정 비율 또한 1%로, 1차심사의 허술한 불인정 사유를 납득할 수 없었던 거의 대부분 난민신청자는 사법부의 심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에는 사유서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위의 인정률에 대해 “이러한 통계는 이의신청 심사에서 1차심사의 결정을 인용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해석될 수도 있고, 난민신청자들이 이의신청을 명백한 이유 없이 여러 가지 개인적 목적을 위한 절차적 도구로 활용하였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6]](#footnote-6) 그러나 시간을 가지고 사례들을 심사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는 위원회가 1차심사의 결정을 번복하기가 쉬울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또, 신청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불인정사유서의 발급이나 이의신청절차에서의 권리 고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절차가 개인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주장은 ‘신청자들이 절차를 남용한다’는 법무부 기존 입장의 변주에 지나지 않습니다.

1. **법무부 단계 세부 심사 현황**
2. **영상녹화 현황**

**[표9] 사무소별 영상녹화 실시현황 (‘14~’17.12)**

**(단위: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무소** | **서울** | **인천공항** | **부산** | **인천** | **광주** | **대구** | **제주** | **여수** | **화성(보)** | **청주(보)** | **계** |
| 2014 | 1 | 2 | 51 |  | 23 | - | 0 |  | 3 | 0 | 80 |
| 2015 | 199 | 11 | 142 |  | 85 | - | 26 |  | 7 | - | 521 |
| **2016** | 110 | 0 | 5 |  | 94 | 0 | 111 |  | 14 | 1 | 335 |
| **2017** | 537 | 10 | 1 | 2 | 68 | 122 | 75 | 2 | 1 | 0 | 818 |

법무부 심사관과의 면담에서는 신청자 요청 시 면담 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면담 조서에는 심사 과정에서의 대화를 기록하는데, 많은 경우 이 조서로는 당시 신청인이 편안하게 자신의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었는지, 통역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질문하는 것에 답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여지가 충분치 않았다든지 하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심사에서 불인정을 받는 대부분의 신청자에게는 불인정 이후의 절차에서 녹음/녹화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2014년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에 영상녹화 제도 운용을 요구한 이후, 영상녹화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표9]를 보면 굴곡이 있지만, 녹음녹화가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2017년은 총 818건으로 전년도 335건에 비해 483건이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거점사무소는 서울로 388% 증가했습니다. 주목해서 볼 사무소는 대구로, 2014년 이후 최초로 영상녹화가 시행되며 총 122건의 녹화가 있었습니다.

1. **통역 현황**

다음은 사무소/언어별 난민 관련 통역수수료 집행내용입니다. 통역의 수요는 기타언어, 아랍어, 영어, 중국어, 우르두어 순입니다. 가장 신청자 수가 많은 서울 사무소가 총 집행금액의 반 이상을 사용했고, 인천, 인천공항, 광주, 대구, 부산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표10] 사무소별 난민관련 특수 외국어 통역 수수료 집행내용**

**(단위:천 원)**

|  |  |  |  |  |  |  |
| --- | --- | --- | --- | --- | --- | --- |
| **언어** | **영어** | **아랍어** | **우르두어** | **중국어** | **기타** | **계** |
| **인천공항** | 17,500 | 11,735 | 1,075 | 475 | 21,875 | 52,660 |
| **서울** | 63,115 | 122,350 | 21,400 | 57,100 | 139,815 | 403,780 |
| **부산** | 1,050 | 6,100 | 6,525 | 675 | 10,100 | 24,450 |
| **인천** | - | 3,675 | 6,050 | 5,225 | 41,725 | 56,675 |
| **광주** | 5,139 | 5,300 | 3,214 | 562 | 12,351 | 26,566 |
| **대구** | 1,375 | 3,875 | 2,675 | 875 | 17,150 | 25,950 |
| **여수** | 698 | - | - | 205 | 757 | 1,660 |
| **제주** | 775 | 1,900 | 400 | 17,625 | 1,425 | 22,125 |
| **화성(보)** | 860 | - | - | 245 | 2,575 | 3,680 |
| **청주(보)** | - | 140 | - | - | 92 | 232 |
| **김해공항** | 650 | - | - | - | - | 650 |
| **법무부** | - | 75 | - | - | 1,560 | 1,635 |
| **합계** | 91,162 | **155,150** | 41,339 | 82,987 | **249,425** | 620,063 |

1. **심사인력 현황**

**[표11] 연도별 난민심사 담당자 현황(‘15~’17.12)**

**(단위: 명)**

|  |  |  |  |
| --- | --- | --- | --- |
| **연도** | **2015** | **2016** | **2017** |
| 담당자 수 | 8 | 32 | 37 |

법무부 단계에서 난민 인정심사에 투입되는 담당 공무원은 전국 총 37명입니다. 한 해 동안 1만 명에 가까운 난민신청자가 있었고, 2017년 12월 말 기준 심사대기자가 9,775명이 남았음에도 담당공무원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사실조사가 필요하고, 신청자들이 겪은 박해에 대한 진술에 자주 노출되어야 하는 등 강도 높은 업무의 특성이 담당 공무원 숫자에는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사무소별 담당공무원 수는 [표19]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12] 사무소별 난민조사관 활동비 집행내용**

**(단위:천 원)**

|  |  |
| --- | --- |
| **사무소** | **지출액** |
| 서울 | 31,200 |
| 인천공항 | 19,200 |
| 부산 | 2,400 |
| 인천 | 6,200 |
| 안산 | 1,000 |
| 수원 | 2,400 |
| 평택 | 2,400 |
| 제주 | 2,400 |
| 대구 | 2,400 |
| 여수 | 2,400 |
| 양주 | 3,400 |
| 광주 | 2,400 |
| 화성(보) | 2,400 |
| 청주(보) | 4,800 |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 13,400 |
| **합계** | **98,400** |

[표12]는 난민조사관 활동비 집행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난민법 제27조에 따라 난민조사관제를 도입하여 1차 심사와는 별도로 난민조사관이 이의신청 건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난민조사관은 난민위원장의 명을 받아 이의신청한 사례에 대한 사실 조사를 수행하고, 사실조사와 난민신청자가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의 양식을 변경하여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난민조사관의 구체적인 현황은 추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유하겠습니다.

 **[표13] 난민 관련 공무원 교육진행내역[[7]](#footnote-7)**

|  |  |  |  |  |
| --- | --- | --- | --- | --- |
| **교육과정** | **횟수** | **일수** | **참석인원** | **내용** |
| 난민전담공무원교육 | 3회 | 각2시간 | 44명 | 면접 시 주의사항, 면접 기법 및 보고서 작성 요령 등 교육 |
| 난민담당자 인권 및 면접기법 등 교육 | 1회 | 5시간 | 64명 | 인권감수성 및 면접기법 등 교육 |
| 출입국항 난민담당자 간담회 및 교육 | 1회 | 3시간 | 12명 | 출입국항 회부심사 개선 논의, 인권감수성 및 면접 기법등 교육 |
| 난민전담공무원 간담회 | 2회 | 각3시간 | 35명 | 난민심사보고서 표준화, 난민실무사례집 발간 등 논의 |
| 난민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 1회 | 2일 | 63명 | 난민심사 사례공유, 난민인권 및 국제 난민동향 등 교육 |

-집합교육과정으로 매년 1회(매회20명) 난민심사관 양성과정 운영

-사이버교육 과정으로 난민소송실무, 심사실무 및 심사기법, 난민인정심사/처우/체류 지침, 난민정책 및 난민법 등 4개 교육과정 운영

반복하여 문제점으로 지적 되는 것은 ‘보직순환으로 인한 난민심사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입니다. 단기적으로나마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사 공무원의 교육입니다. ‘단 한 번의 집합 교육’이 전부이던 2015년에 비해 2016년에는 상•하반기 UNHCR과 함께 워크숍을 실시했고, 본부가 주관한 난민심사관 등 난민업무 담당자 교육 또는 간담회가 총 4회 추가로 실시되었습니다. 2017년은 총 8회로 전년도에 비해 교육 횟수가 2배 가량 늘었고, 교육 내용도 구체화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의 모니터링도 필요한 때입니다.

1. **사법부 심사 현황**

**[표14] 연도별 행정소송 난민인정자 수 (’01~’17.12)**

 **(단위:명)**

|  |  |
| --- | --- |
| **연도** | **행정소송** |
| 2001 | - |
| 2002 | - |
| 2003 | - |
| 2004 | - |
| 2005 | - |
| 2006 | 1 |
| 2007 | 1 |
| 2008 | 16 |
| 2009 | 4 |
| 2010 | 9 |
| 2011 | 18 |
| 2012 | 15 |
| 2013 | 10 |
| 2014 | 3 |
| 2015 | 0 |
| 2016 | 3 |
| 2017 | 5 |

**[표 15] 연도별 행정소송 난민인정률 (‘13~’17.12)**

 **(단위:%)**

|  |  |
| --- | --- |
| **연도** | **행정소송** |
| 2013년 | 1.7 |
| 2014년 | 0.07 |
| 2015년 | 0 |
| 2016년 | 0.04 |
| 2017년 | 0.08 |

행정청인 법무부의 판단을 견제해 주어야 할 법원에서도 난민 인정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본인의 상황을 설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어려운 신청자들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판에서 높은 수준의 증명이 요구됩니다. 또 소송을 진행하는 신청자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드물고, 이런 경우 자신의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소명해야 할지도 모른 채 재판이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최근 난민재판 경험이 있는 판사가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을 구분하기 위해 애쓴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가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주로 언급하는 ‘가짜 난민 골라내기 식의 심사가 법원심사에서도 적용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2. 체류지위별 심사 현황**

1. **인도적체류자 심사 현황**

**[표16] 2017년 심사단계별 인도적체류허가부여 현황**

**(단위: 명)**

|  |  |  |  |
| --- | --- | --- | --- |
| **단계** | **1차심사** | **2차심사** | **합계** |
| 인원 | 290 | 28 | **318** |

**[그래프7] 국적별 인도적체류자 누적 수  ('94~'17.12)\***

**(단위: 건)**

2017년 한 해 동안 인도적 체류지위를 받은 사람은 총 318명으로, 전년도 246명과 비교하여 72건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318건 중 91%가 법무부 1차 심사 단계에서 인도적체류지위를 받았으며, 가족결합으로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50건을 제외하면 총 268명이 법무부 심사를 통해 인도적체류 허가를 받은 셈입니다.

2017년 12월 기준 누적 인도적체류지위자 수는 총 1,474명이며, 국적별로 시리아 1,120명, 중국 34명, 파키스탄 29명, 나이지리아 6명, 이집트 4명, 방글라데시 3명, 기타 278명 순입니다. 법무부는 2016년 시리아 국적의 난민들에게 난민 인정이 아닌 일괄적 인도적체류지위부여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인도적체류지위를 받은 후 소송을 통해 난민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던 사람이 17명이나 됩니다.

인도적체류지위는 난민인정이 아닌 불인정의 한 갈래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 지위까지도 ‘난민 보호’라는 애매한 범주에 포섭하고 있습니다. 인도적체류지위자에게는 난민법 제39조와 법무부의 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에 따라 1년 미만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단순 노무직종에 한해 노동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될 뿐 의료, 교육, 아동, 혼인, 노동 등의 기본권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체류마저도 3개월 단위의 짧은 체류 허가가 주어져 실제적으로는 일할 권리에 심각한 침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도 난민을 보호한다는 범주 아래 이 지위를 놓기 때문에, 인도적체류지위자들은 자신이 받은 지위가 난민 지위의 불인정임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난민 지위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소 제기 기간을 놓치기도 합니다. 인도적 체류지위자의 삶에 대한 권리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난민 인정에 대한 법무부의 부담도 간단히 인도적체류지위 부여로 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1. **재신청자 심사 현황**

**[표17] 연도별 재신청자 현황**

**(단위: 건)**

|  |  |  |
| --- | --- | --- |
| **2016년** | **2017년** | **합계** |
| 301 | 991 | **1,292** |

2017년 재신청은 총 991건으로 전년도 301건에 비해 690건 늘었습니다. 총 신청자 9,942명 중 약 10%가 재신청인 셈입니다. 2016년 7월, ‘체류관리 강화 지침’ 시행 이후 재신청자들에게 체류와 취업에 대한 권리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을 볼 때, 법무부는 재신청자에 대해 ‘남용적’신청 이라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높은 이의신청/항소/재신청률은 돌아갈 곳 없는 난민들이 ‘제대로 심사받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난민인권센터에 방문하는 난민 대부분이 아무런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음에도 재신청을 하는 이유는, 최초 신청 건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진술 기회 박탈, 통역오류, 불허 사유의 이해 불가능, 절차 및 권리 안내 부재, 공무원/변호사의 독단적 절차 진행 등)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신청한 난민신청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받은 ‘출국명령서’의 출국 기간을 유예하는 도장을 받아 살아갈 뿐, 자신을 증명할 외국인 등록증 한 장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 자체가 어떤 권리의 근거도 되지 않음에도 말입니다. 지금과 같은 재신청자에 대한 권리 제한은 신속히 없어져야 합니다.

**3. 사무소별 심사 현황**

1. **거점사무소 별 심사 현황**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전국의 출입국사무소와 출장소에서 난민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이 서울에 집중되는 것은 여전하지만, 점점 더 전국적으로 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18] 거점 사무소별 난민 신청 현황** **('08~'17.12)**

**(단위: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도** | **합 계** | **서울** | **부산** | **광주** | **대구** | **제주** | **외국인보호소[[8]](#footnote-8)** | **인천공항** | **인천[[9]](#footnote-9)** | **기타[[10]](#footnote-10)** |
| **2008** | 364 | 282 | 24 | 0 | 33 | 0 | 10 | 0 | - | 15 |
| **2009** | 324 | 276 | 5 | 0 | 24 | 0 | 11 | 0 | - | 8 |
| **2010** | 423 | 403 | 1 | 0 | 3 | 1 | 13 | 0 | - | 1 |
| **2011** | 1,011 | 1,003 | 0 | 0 | 0 | 0 | 8 | 0 | - |  |
| **2012** | 1,143 | 1,132 | 0 | 0 | 0 | 0 | 11 | 0 | - |  |
| **2013** | 1,574 | 1,435 | 15 | 0 | 16 | 0 | 8 | 15 | - | 112 |
| **2014** | 2,896 | 2,040 | 49 | 114 | 140 | 318 | 0 | 27 | - | 208 |
| **2015** | 5,711 | 2,456 | 0 | 621 | 553 | 227 | 0 | 284 | - | 1561 |
| **2016** | 7,542 | 6,224 | 350 | 439 | 150 | 295 | 31 | 63 | - |  |
| **2017** | 9,942 | 6,448 | 326 | 409 | 175 | 312 | 24 | 21 | 2,227 |  |

서울은 꾸준하게 가장 많은 난민신청을 받는 거점사무소입니다. 전체 신청자의 64%가량이 서울 거점사무소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했습니다. 2017.03.13기준으로 인천사무소가 거점사무소로 추가 지정되면서 작년 기준으로 서울에 80%이상 몰리던 신청자비율이 나뉘었습니다.

인천공항 난민신청은 2015년에 정점을 직은 뒤 2013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시리아 난민들이 공항에서의 불회부 결정으로 6개월 넘게 사실상의 구금생활을 했던 것이 전 세계에 알려진 후의 여파일까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점 사무소별로 배정된 심사담당공무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19] 사무소별 난민심사 담당자 현황**

 **(단위: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무소** | **서울** | **인천공항** | **부산** | **인천** | **광주** | **대구** | **제주** | **화성(보)** | **청주(보)** | **계** |
| 인원 | 22 | 4 | 1 | 4 | 2 | 1 | 1 | 1 | 1 | 38 |

거점사무소별로 심사종료자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38명의 공무원에게 한 해 동안 주어지는 9,942건의 심사. 사실상 1인당 261명의 심사지만 거점사무소별로 심사담당자 숫자에 편차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한 명의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심사 건수는 300건이 넘기도 합니다.

**[표20] 2017년 사무소별 난민인정 현황[[11]](#footnote-11)**

 **(단위:명)**

|  |  |  |  |  |  |  |
| --- | --- | --- | --- | --- | --- | --- |
| **사무소** | **서울** | **부산** | **인천** | **광주** | **화성보호소** | **계** |
| 인원 | 31 | 13 | 12 | 4 | 2 | 62 |

**[표21] 2017년 사무소별 난민인정률**

|  |  |  |  |  |  |  |
| --- | --- | --- | --- | --- | --- | --- |
| **사무소** | **서울** | **부산** | **인천[[12]](#footnote-12)** | **광주** | **화성보호소** | **계** |
| **난민인정** | 31명 | 13 명 | 12 명 | 4 명 | 2 명 | 62 명 |
| **난민신청** | 4,146건 | 221 건 | 2,227건 | 359 건 | 9 건 | 4,828 건 |
| **인정률** | 0.74% | 5.88% | 0.5% | 1.11% | 22.22% |  |

2017년 한 해 동안 난민 지위를 가장 많이 부여한 사무소는 서울사무소로 31건입니다. [그래프9]를 보면, 난민 인정률이 가장 높은 사무소는 화성보호소> 부산> 광주> 서울> 인천 순이며 대구, 제주, 여수, 청주보호소에서는 단 한 명도 난민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1. **사무소별 세부 현황**

**[표22]** **서울 거점 지역 사무소별 난민 신청 현황**  **('16~'17.12)**

**(단위: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도** | **합 계** | **서울** | **안산** | **양주** | **수원** | **인천** | **평택** | **천안** | **청주** | **서산** | **춘천** | **대전** | **당진** | **남부** | **동해** | **고양** | **속초** |
| **2016** | 6,224 | 3,099 | 660 | 547 | 578 | 639 | 453 | 129 | 52 | 8 | 14 | 8 | 7 | 0 | 13 | 17 |  |
| **2017** | 6,448 | 4,146 | 33 | 1,208 | 526 | 93 | 122 | 51 | 55 | 18 | 14 | 19 | 28 | 0 | 15 | 119 | 1 |

지난 한 해 서울 거점 사무소의 지역 사무소 중 절반 이상은 서울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양주, 수원, 평택, 고양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신청이 몰린 지역은 실제로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속합니다. 안산에서의 접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인천 거점사무소가 새로 생기면서 3월 13일부터의 안산 신청자가 인천에서 심사받았기 때문입니다. 속초에서는 2017년에 최초의 신청접수가 있었습니다.

**[표23]** **부산 거점 지역 사무소별 난민 신청 현황  ('16~'17.12)**

                                                                                                   (단위: 건)

|  |  |  |  |  |  |  |
| --- | --- | --- | --- | --- | --- | --- |
| **연도** | **합 계** | **부산** | **울산** | **창원** | **김해** | **사천** |
| **2016** | 350 | 226 | 110 | 14 | 0 | 0 |
| **2017** | 326 | 221 | 94 | 11 | 0 | 0 |

부산 거점 사무소 관할 지역에서는 작년과 비슷한 정도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부산이 221명, 울산이 94명으로 전체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부산 거점사무소는 심사 담당 공무원이 1명으로, 담당 공무원 1인당 심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표24]** **광주 거점 지역 사무소별 난민 신청 현황  ('16~'17.12)**

 **(단위: 건)**

|  |  |  |  |  |  |
| --- | --- | --- | --- | --- | --- |
| **연도** | **합 계** | **광주** | **전주** | **목포** | **군산** |
| **2016** | 439 | 325 | 112 | 0 | 2 |
| **2017** | 409 | 359 | 43 | 0 | 7 |

광주 거점 지역의 사무소도 작년과 비슷한 정도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광주 사무소가 신청 대부분(87%)을 차지합니다. 군산에서는 2016년에 최초 2건의 난민신청이 있었던 이후로 올해도 7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표25]** **대구 거점 지역 사무소별 난민 신청 현황  ('16~'17.12)**

**(단위: 건)**

|  |  |  |  |
| --- | --- | --- | --- |
| **연도** | **합 계** | **대구** | **구미** |
| 2016 | 140 | 140 | 0 |
| **2017** | 175 | 175 | 0 |

**[표26]** **기타 거점 지역 사무소별 난민 신청 현황  ('16~'17.12)**

                                                   (단위: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도** | **합계** | **제주** | **화성보호소** | **청주보호소** | **여수[[13]](#footnote-13)** | **인천공항** | **기타** |
| **2016** | 140 | 295 |  12 | 5  | 14 | 63 |  |
| **2017** | 357 | 312 | 9 | 2 | 13 | 21 |  |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결과 (법무부 난민과, 2017.02.05회신)*

*작성: 이슬, 고은지*

1. 1951년 난민협약상의 난민 정의에 포함된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협약상 ‘난민’입니다. 유엔난민기구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은, 난민이 되는 상황은 필연적으로 ‘그의 난민으로서의 지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이전에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그러므로 ‘난민으로서의 지위의 인정은 그를 난민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으로서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법무부의 난민 인정도 난민임을 재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만, 혼선을 막기 위해 이하 ‘인정’으로 씁니다. [↑](#footnote-ref-1)
2. 법무부 이의신청단계를 말합니다. [↑](#footnote-ref-2)
3. 2016년 난민네트워크의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처분청이 공개한 사례 39건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없는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의심의 여지없는 명백성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 이런 사유로 불회부 결정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정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점도 이후 절차에 어려움을 줍니다. [↑](#footnote-ref-3)
4. 재정착난민을 제외한 숫자. [↑](#footnote-ref-4)
5. 난민심판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법무부 용역보고서 11쪽, 2017.08 [↑](#footnote-ref-5)
6. 난민심판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법무부용역보고서 10쪽, 2017.08 [↑](#footnote-ref-6)
7. 법무부 난민과 주관 난민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및 간담회 등 실시 [↑](#footnote-ref-7)
8. 화성 보호소, 청주 보호소, 여수 보호실을 포함합니다. [↑](#footnote-ref-8)
9. 2017년 접수건은 3/13 기준으로 1/1부터 3/12까지의 안산, 인천 접수건이 거점사무소 서울에 포함되었고, 3/13부터 12/31까지의 안산, 인천 접수건은 거점사무소 인천에 포함되었습니다.  [↑](#footnote-ref-9)
10. 왼쪽 지역 외 총합. 2016년에는 기타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통계는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제주, 외국인 보호소, 인천공항 외 지역은 기타 항목으로 일괄 분류되어 법무부로부터 정보를 받았습니다. 2016년에는 2015년까지 기타로 분류되었던 기타지역이 각 거점 사무소 8개 단위로 분할, 합산되었습니다. [↑](#footnote-ref-10)
11. 1차 심사 인정 건 기준, 가족결합 35인 포함 [↑](#footnote-ref-11)
12. 3/13~12/31까지의 통계임. 이전 신청자는 서울거점사무소에 포함. [↑](#footnote-ref-12)
13. 2016년은 여수보호소 [↑](#footnote-ref-13)